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736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 권성동·강대식·강명구

강민국・강선영・강승규

고동진・곽규택・구자근

권영세 • 권영진 • 김 건

김기웅 · 김기현 · 김대식

김도읍 · 김미애 · 김민전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 • 유영하 • 유용원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윤한홍ㆍ이달희ㆍ이만희 이상휘 · 이성권 · 이양수 이인선 · 이종배 · 이종욱 이철규 • 이헌승 • 인요한 임이자 · 임종득 · 장동혁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주진우 주호영 · 진종오 · 최보윤 최수진 · 최은석 · 최형두 추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실한 인력관리 실태 결과(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167회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점검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 사례 적발 등), 국가정보원 등의 보안점검 결과(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관리<6개>, 시스템보안<11개>, 인원 및 자산<7개>, 위기대응<7개> 등 31개 점검 항목에서 평가 점수 31.5점이 나왔으며, 31개 항목 중 0점을 받은 항목이 15개에 달함), 사법부 법관의

선관위 겸직에 따른 불신 증폭, 최근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관련 선관 위 관계자 영장청구 기각 사례 등으로 인해 선관위 선거관리 시스템 과 조직·인사·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대두되고 있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투서 등을 받고도 "가족기업"이라며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등 제도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미진하였고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로 자체 감사의 권능을 상실하여 부정과 비리로 얼룩져 왔고,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한 권한침해 결정(2023헌라5)으로 외부 제도적 감시의 장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그동안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특별감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감사의 감사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조직·인사· 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으로부터(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수는 50명 이내로 함(안 제8조).
- 마.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한 출석· 답변, 관계문서·물품 등의 자료제출, 금융기관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9조).
- 바. 특별감사관은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
- 사. 특별감사관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결과를 보고 함(안 제11조, 제12조).
- 아. 특별감사관은 징계요구, 변상책임, 시정·개선 요구, 고발 등을 할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23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특별감사를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감사관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 등) 이 법에 따른 특별감사관의 감사 대상은 다음 각 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 1. 선거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외부 해킹 논란, 투·개표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망 분리(인터넷망/업무망/선거망) 개선여부, 통합선거인명부 관리정도, 투표용지 인쇄관리 및 보안대책, 온라인시스템 대리투표 방지 관련 취약 점검, 선상투표 관리, 재외선거망 관리, 개표 DB해킹 보안유지 대책 마련여부, 선거관리위원회시스템 관리 외부 위수탁 업체의 보안유지대책 마련여부, 용역업체 수의계약 등 위반점검, 기타사항 등) 및 점검이행여부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인사·회계 관리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 등 근태 실태
- 5.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전반
- 제3조(특별감사관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명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서면으로 의뢰 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장은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 원법」 제17조의 직에 20년 이상, 제17조의2의 직급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원내 제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 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4조(특별감사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조(특별감사관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감사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감사관의 직무 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감사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에 대한 총괄 및 특별감사결과 확정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 및 제8조의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와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특별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감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감사 활동의 지원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 ① 특별감사관은 「감사원법」 제17조의 직에 15년 이상, 제17조의2의 직급에 근무한 사람 중에서 2명의 특별감사관보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감사관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에 2명의 특별감사관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특별감사관보는 특별감사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내용과 관련된 특별감사를 담당하고 감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 ③ 특별감사관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감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감사관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감사관보와 감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 ② 특별감사업무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국회의 예산지원은 보장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감사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출석 답변·자료·장부 등 제출·봉인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자 또는 특별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

답변의 요구

- 2.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자료 제출 요구
- 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 ② 특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특별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 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종사하 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특별감사관 등의 의무) ① 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및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

- 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감사관 등과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감사관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1조(특별감사기간 등) ① 특별감사관은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감사관보 및 감사관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감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자료요구 등 특별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 터 6개월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특별감사 결과를 조치한다.
 - ③ 특별감사관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특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1회에 한정하여 감사기간을 60일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는 감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감사 결과의 보고) ① 특별감사관은 제2조 각 호의 특별감사에 대하여 감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징계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 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 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 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날까지로 한다)에 해당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등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은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특별감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변상책임 요구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따

- 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결정 할 수 있다.
- ② 특별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확정하면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분명히 밝힌 변상명령 요구를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 ③ 제2항의 변상명령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상 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변상하게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특별감사관이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② 특별감사관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 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끝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 2항에 따른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 나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시정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등의 요구)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8조(권고 등) ①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1.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 절한 경우
 -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감사관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9조(고발) ① 특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

- 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특별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요구 받은 기관의 장이 제12조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발할 수있다.
- 제20조(보수 등) ① 특별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급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감사관보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의 예에 준한다.
 - ③ 감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감사관의 퇴직 시까지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 ⑤ 특별감사관은 특별감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 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퇴직 등) ① 특별감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감사관 등이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 제7조에 따른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 등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감사관 등은 전임 특별감사관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는 경우 제11조의 감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감사관의 감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감사관이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감사관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감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감사관 등은 제12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22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사관 등을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특별감사관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감사관보, 감사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감사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 ③ 특별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를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신분보장) 특별감사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24조(회계보고 등) 특별감사관은 감사 기간이 만료되면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감사원에 인계하여야한다.
- 제25조(행정소송과의 관계) 감사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6조(벌칙)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자,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 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방해한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사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7조(벌칙) ① 특별감사관 등이나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감사관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10조제1항을 위반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 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감사관, 특별감사관보, 감사관 및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1조에 따라 만료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세부 운영 기준) 이 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감 사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